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0

발의연월일: 2024. 7. 10.

발 의 자:이강일·김남근·박상혁

강준현 • 이연희 • 한정애

박수현 • 박범계 • 노종면

민병덕 · 김성환 · 복기왕

오기형 · 채현일 · 천준호

유종군 • 박용갑 의원

(17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인 지위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그리고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 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지급능력이 넉넉하지 않은 가 맹점사업자가 경영상의 곤란을 겪을 수 있고, 사후에 비용분담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에 한정하여 보장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 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현실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협의요청권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처럼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가맹 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등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 나.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모든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2조의6).

- 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함(제13조제2항).
-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협의 횟수·주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 마.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여 단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사유 및 취소 시청문 절차를 신설함(안 제14조의3 신설).
- 바.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33조).
- 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37조의2제2항).
- 아. 가맹본부가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41조제2항).

법률 제 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가맹점사업자의 의제) 가맹지역본부는 제12조, 제12조의5, 제13조, 제14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의2, 제41조제2항, 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가맹점사업자"로 본다.

제12조의6제1항 본문 중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를 "실시하려는 경우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가맹점사업자단체는"을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협의 횟수·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수의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고 소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기할 수있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 1.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었을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
 - 나.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가입한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가맹점사업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
 - 1.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명칭 목적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구성원의 자격·명부(구성원 수를 포함한다)
- 4.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 5.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등록사업자단체"라 한다)가 그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제1항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3. 스스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4.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3조제1항 중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을 "제12조의6제1항 • 2항, 제14조의2제3항·제5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을 "제12조의6제1항·2항, 제14조의2제3항·제5항"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 5"를 "제6조의5,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6까지,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4조의3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제41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가맹 계약을 해지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사업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본부가 제6조의5,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6까지,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가맹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체 가 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가맹점사업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의 실 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 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체결한 광고·판촉행 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 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재 정 안 제2조의2(가맹점사업자의 의제) 가맹지역본부는 제12조, 제12조의5, 제13조, 제14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의2, 제41조제2항, 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가맹점사업자"로 본다.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실시하려는 경우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u>받아야</u>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 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	

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 시할 수 있다.

- ② · ③ (생 략)
-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생 략)
 - ②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 <삭 제> 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 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③ · ④ (생 략)
-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생 략)
 -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 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 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 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 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 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제14조의 3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 사업자단체는-----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 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 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 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 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 적으로 협의한다.

④ · ⑤ (생 략) <신 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협의 횟 수 · 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협 의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 유 없이 그 협의 요청을 거부 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수의 등록된 가 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 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 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 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 고 소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 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 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동안 연기할 수 있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게 등록할 수 있다.

- 1.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었을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
 - 나.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 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가 입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맹점사업자 수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 ② 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게 등록하여야 한다.
- 1.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명칭 · 목적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구성원의 자격・명부(구성원 수를 포함한다)
- 4.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 5.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사항
- 6.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등록사업자단체"라 한다)가 그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오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는 등록된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 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제1항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못한 경우

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 저 원회는 제6조의5제1항 · 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 조제1항. 제11조제1항 · 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 제2항, 제12조의3제1항 · 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 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 5조의2제3항 · 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 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 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 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 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스스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
<u>는 경우</u>
4.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
지 아니한 경우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
도지사는 제4항(제3호는 제외
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
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
<u>다.</u>
제33조(시정조치) ①
<u>제12조</u>
<u>의6제1항 · 2항, 제14조의2제3항</u>
<u>• 제5항</u>

② · ③ (생 략)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 지 회는 제6조의5제1항 · 제4항, 제 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제1항 · 제2항, 제 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 제 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 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 5조의2제3항 · 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 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에35조(과징금) ①
제12조의
<u>6제1항 · 2항, 제14조의2제3항 ·</u>
제5항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 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 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③ · ④ (생 략)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생 략)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현
행과 같음)
②
<u>제6조의5, 제7조, 제9조부</u>
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6까지, 제13조 또는 제
<u>14</u> 조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신 설>

2. (생략)

제41조(벌칙)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신 설>

2. · 3. (생략)

③ ~ ⑤ (생 략)

_		-
_		
1	. (현행과 같음)	
1	의2. 제14조의3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등록•변경등	-
	록에 관한 업무	-
2	. (현행과 같음)	
न भी 4	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2)	-
_	- 	-
_		_
_		
	(-1 -1 -1 -1 -)	

- 1. (현행과 같음)
- 1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부당

 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자
- 2. · 3.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